

옥외탱크저장소[] 기술검토신청서 암반탱크저장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검토번호	검토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	--

탱크의 식별 및 규격	시설번호	탱크의 내용적
-------------	------	---------

위험물의 유별·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배
-----------------------------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	----------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2.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3.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 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4.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작성방법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 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